

2025년 6차산업 인증 지원사업 공모

한국서부발전(주)와 함께 하는 2025 프로젝트 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025년 6차산업 인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10. 22.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6차산업 인증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50,000천원(센터 45,000천원^{90%}, 자부담 5,000천원^{10%})

-1개소 당 최대 25,000천원 내외(자부담 2,500천원 내외 포함)로 심사를 통한
지원액 확정: 최대 지원한도 결정 방식(공모신청 업체 수, 공모신청 업체의 매출액, 고용(4대보험), 사업규모, 확장성 등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역량 평가를 적용하여 지원액 조정)

-컨설팅은 센터 지원(필요시 현장코칭 자부담 비용 지원)

다. 사업기간 : 2025. 10. ~ 12.

라. 사 업 량 : 최소 2개소(각 분야)

마. 사업내용 : (3유형)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육성, 체험 전시, 융복합산업화

신청유형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개소당 지원 (천원)	비고
		계	센터	자담		
계	2	2	45,000	5,000	개소당 25,000 (최대)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창업·육성						
농림축산식품 체험전시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공모사업비 지원한도 내 심사 점수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유형별 사업 수요량 및 예산 요구액에 따라 사업 간 예산 조정

※ 최대 지원한도 결정 : 공모신청 업체수, 공모신청 업체의 매출액, 고용인력(4대보험), 사업규모, 확장성 등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역량 평가 적용 조정

바. 지원대상 : 충남사회적경제기업

사. 지원내용 : 사업유형별 정하는 사항(자본 및 경상 보조)

2. 사업 유형별 지원내용

①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제조·가공) 지원

구분	지원내용
창업 보육	경상보조 : 제조·가공 관련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 제품 및 공동브랜드개발비, 지적재산권 획득, 네트워크 구축·운영, HACCP 인증 컨설팅, 자문료 등 운영경비 자본보조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장비 구축, HACCP 및 GMP 시설 등 * 설계·감리비 : 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
육성	경상보조 : 제품디자인 등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적재산권 획득, 네트워크 구축·운영, HACCP 인증 컨설팅, 자문료 등 운영경비 자본보조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장비 구축, HACCP 및 GMP 시설 등 * 설계·감리비 : 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
마케팅	경상보조 : 제품디자인 등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적재산권 획득, 네트워크 구축·운영, 자문료 등 운영경비
식품 소재 등	경상보조 : 제품디자인 등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적재산권 획득, 네트워크 구축·운영, HACCP 인증 컨설팅, 자문료 등 운영경비 자본보조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장비 구축, HACCP 및 GMP 시설 등 * 설계·감리비 : 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

②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경상보조 :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
- 자본보조 : 홍보·체험 시설비, 사업필요 시설장비 설치 등

③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화지원

- 경상보조 :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융복합산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 자본보조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3. 사업 유형별 지원조건

①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제조·가공) 지원

구분	운영실적 기준	매출액 기준
창업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	창업하고자 하는 제조·가공분야 전년도(2024년)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보육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자	보육하고자 하는 제조·가공분야 전년도(2024년) 매출액이 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적이 5년 이상인 자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가공분야 전년도(2024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마케팅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자	마케팅하고자 하는 제품 및 상품 분야 전년도(2024년)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식품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	지원하고자 하는 제품 및 상품 분야 전년도(2024년)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이상(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②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충청남도에서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농산품 관련 체험·판매·전시장 설치·운영이 가능한 자

③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화지원

-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 6차산업을 연계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려는 충남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0. 23.(목) ~ 11. 6.(목) 24:00
- 접수처 : ma@cnse.kr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이메일) 접수
- 공모일정

구 분	기 간	소요기간	비 고
공모기간	10. 23.(목) ~ 11. 6.(목)	2주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11. 7.(금)	1일	
현장심사	11. 10.(월) ~ 11. 14.(금)	5일	
지원기업(최종) 선정	11. 17.(월)		

※ 상기 공모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계 서류
-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보조사업 이력서 등
- 기타 증빙서류 등(기본 및 필수서류, 시·군작성 확인서류, 선택 서류 등)

5. 심사절차 및 방법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기업 컨설턴트, 관련학과 교수, 전문연구기관, 유통전문가, 행정 등 센터 광역컨설턴트 및 충남6차산업지원센터 전문가 POOL 내에서 심사일정 참여 가능한 전문가 3인 내외 구성

나. 심사절차

〈1차(서류) 심사평가〉 【선정점수】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가점항목 최대 10점까지 별도 심사점수 반영) 【심사방법】 신청미비서류 보완가능여부 등 고려 발표평가 대상 선정
〈2차(현장) 심사평가〉 【선정점수】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선정방법】 100점 만점 기준
1) 1차(서류평가) 심사결과 신청서류 미비 및 신청자격요건 등 고려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발표평가 추진 (필요시 서류평가 전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2) 2차(현장평가)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중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최종 보완사업계획서 준비 요청 가능)

다. 심사방법

(1) 1차(서류평가)심사 : 사업계획서 서류 및 지원요건(가점항목) 기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첨부서류) 적합여부 등 점검 - 서류평가 실시 후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통과 : 서류평가 심사위원이 확인한 가점항목 포함) *지원기업 수가 2개 미만인 경우 적격여부 판단 및 재공고 (3) 2차(현장평가)심사 : 서류심사 통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심사기준표 기준) - 사업대상기업 현장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30 ~ 40분) - 현장평가 실시 후 우선지원 대상 여부 등 고려 사업대상 선정(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통과) *서류심사 통과 기업이 2개소 미만인 경우, 적격여부로 판단 (4)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 1·2차 심사결과보고 후 사업대상자 최종(보완)사업계획서 심사의견 반영여부 검토 후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사업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 농약, 사료, 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군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가능
 -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지원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제외)등은 동 포괄지원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지원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기준 : 사업지원금 범위 내, 지원금 이외 전액 자부담